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지원신청서 작성 안내

* 아래 내용 및 공고문의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 작성양식

- 지원신청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한글파일(hwp)로 **최대 A4 5매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만** 작성바랍니다. (예산집행 제외)
- 본문의 글꼴은 맑은고딕 11포인트로 작성, 줄간격은 160%로 작성
- 파란 안내글씨는 삭제하고, 검정색으로 작성하여 제출
- 파일명은 “지원신청서_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_신청자명”으로 제출
- 이미지 일체 첨부 금지(블라인드 심사제도 도입으로,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방지 차원)
- 기본 양식을 준수하되, 추가 기술 사항이 있을 경우 양식 일부 변경 가능
예) 표로 되어있는 부분은 내용이 추가될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유의사항

- 본 지원신청서는 심의자료로 활용되오니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충실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본 사업의 지원신청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붙임 5. 서약서, 공정심의서약서 반드시 작성·첨부 ※ 지원신청서(필수자료) 누락 시,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 본 사업의 **1차 심사는 블라인드로 진행되므로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서에는 **사업명,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장소(공간), 기간은 명시하지 않으며**, 2차 심의 시 제출하는 자료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지원신청 개요 입력 시 사업명, 장소 및 기간은 명시해야 하며 이는 2차 심의 시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동료그룹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지원자 전원이 1차 심사 심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블라인드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동료그룹의 공정한 심의 도모 및 경력으로 발생하는 선입견 방지 차원에서 지원신청서에 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경력, 인적사항 등을 제외합니다. 지원신청서에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직접 기입한 경우 행정심의 결격대상에 해당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 지원신청한 단체의 조직명 및 개인의 이름
 -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명
 - 지원신청한 단체 및 개인이 수행/제작/기획한 사업명/작품명/제작물 등 전반(이력기재금지)
 - 지원신청한 단체의 조직 구성(단체 대표자명, 예술감독명, 실무자명 등)
 - 지원신청한 단체 및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 및 장소의 이름
 - 이 외,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전반

- 본 사업의 지원자는 지원심의 및 사업수행과정 등 전 사업 과정에 참여해야하며, 지원신청 시, 심의 및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심의 당시의 지원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수준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하며, 경우에 따라 향후 사업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예산편성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지원신청액 작성안내

-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는 자부담(자체부담경비)으로 의무편성 제외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보조사업자 자율편성가능 예산항목>에 한하며, 예산과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심의 과정 내에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정액지원 사업으로서, 실제 사업 운영 기간(6개월) 내 소진 가능한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정액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고, 정액지원 금액을 NCAS와 지원신청서에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 예산계획 작성 시 반드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개요의 예산(총 소요액과 지원신청액 모두)과 지원신청서의 예산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예시) 총 소요액 10,000,000원, 신청액 10,000,000원 입력

-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서면)계약서 등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 서면 체결 이행 의무)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을 제공 받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 : <http://artinsure.kawf.kr/>)
- 미투(Me Too)운동으로 대변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을 확인(체크) 후 세부 신청개요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준수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http://www.kawf.kr/social/sub12.do>)을 통해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심층적인 성희롱·성폭력 워크샵(ex참여형 교육 등)을 보조금 내 편성이 가능합니다.
- 창작활동 유지를 위한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에게 보조금 내 돌봄 비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돌봄비는 지원신청 시 사전 예산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부 신청 시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통해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여 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해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1시간당 1만원 기준)
- 본 사업은 장애예술 활동 지원을 촉진하고자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관련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내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를 계획하고 있는 신청자는 [붙임3]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친화형 프로그램 양식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을 참고했습니다)

□ 문의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총괄부 기초예술다양성증진사업 담당자

- 문의전화 : 061-900-2163 / 061-900-2167 - Email : jeena@arko.or.kr / hansol71671@arko.or.kr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 아래 사항은 신청 접수 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사전 동의 항목

·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에 선정된 예술인 (단체)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본 사업의 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지원신청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평가 관리, 타 기관 중복지원 검토, 공공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본 사업은 <블라인드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동료그룹의 공정한 심의 도모 및 경력·이력으로 발생하는 선입견 방지
차원에서 지원신청서에 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경력, 인적사항
등을 제외합니다. 지원신청서에 지원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직접 기인한 경우 행정심의 결격대상에 해당되므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통 질문

○ 평가항목

[사업목적과 신청사업의 부합성 40%]

- 본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예술계의 다양성과 실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가?

Q1

지원자가 생각하는 다원예술은 무엇인가요.

본 사업은 <블라인드 지원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작성 시 지원자 프로젝트의 사업명, 인적사항, 경력 등 신청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작성은 행정심사 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일체 금지
* 해당 문항 최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2

지원자의 프로젝트가 본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기재해주세요.

본 사업은 <블라인드 지원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작성 시 지원자 프로젝트의 사업명, 인적사항, 경력 등 신청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작성은 행정심사 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일체 금지
* 해당 문항 최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메모:1] arko 2021-04-12 20:25

※ [붙임 1] 파일을 참고하여, 현재까지 논의된 다원예술의 개념과 비전체계를 바탕으로 지원자가 생각하는 다원예술에 대해 기재해주세요.

[메모:2] arko 2021-04-12 20:27

※ 지원자가 생각하는 다원예술의 정의와 기존의 다원예술 흐름 [붙임 1]을 참고하여 다원예술 활동지원이 지원자의 프로젝트와 적합한 이유를 작성해주세요.

○ 평가항목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

☞ 사업의 기획의도 및 동기, 주제, 사업의 차별성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요.

본 사업은 <블라인드 지원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작성 시 지원자 프로젝트의 사업명, 인적사항, 경력 등 신청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작성은 행정심사 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일체 금지

* 해당 문항 최대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인적사항, 경력 등 신청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작성은 금합니다.

[프로젝트 규모] (필수항목)	
총 참여인원	
역할	(명)

향후계획

☞ 본 사업의 지원 이후 향후 활동 계획을 기술해주시요.

본 사업은 <블라인드 지원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작성 시 지원자 프로젝트의 사업명, 인적사항, 경력 등 신청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작성은 행정심사 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일체 금지

* 해당 문항 최대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메모:3] arko 2021-04-12 20:28

※ [붙임 2]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 시 세부추진계획에 해당 내용을 잘 녹여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메모:4] arko 2021-04-12 20:32

※(필수) 사업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 규모 및 참여진의 역할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의 양식은 자유롭게 편집 및 사용하여 기재하셔도 됩니다. 단, 블라인드에 위배되는 인적사항, 경력 등 신청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작성은 금합니다.

○ 평가항목

[예산편성의 적절성 30%]

- 예산 편성항목과 단가 등이 제시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예산집행계획

※ 예산자율편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접경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보조사업자 자율편성가능 예산항목>에 한하며, 예산과목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 예산편성의 적절성은 심의 과정 내에서 평가될 수 있음.

■ 예산계획 작성 시 반드시 총소요액과 지원신청액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기재한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부담 적용 제외 사업입니다.

■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프로그램 운영계획 시 [붙임 3]를 참고해주시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예산항목에 추가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영유아 자녀 돌봄비용은 보조금 내 편성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가능. (1시간 1만원 기준)

(단위: 원)

지원유형	지원유형③	지원신청액	(15,000,000)
------	-------	-------	--------------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근거	지출예산
인건비	기타직보수	○기획인력 2,000,000원 x 1개월 x 1명	2,000,000
	일용임금	○단기행사요원 30,000원 x 5일 x 5명	750,000
		○영상촬영인력 200,000원 x 1일 x 2명	400,000
	기타인건비	○영문번역사래비 300,000원 x 1명	300,000
		○수화통역사래비 100,000원 x 5회 x 1명	500,000
		합 계	3,950,000
운영비	일반수용비	○대표자 사례비 1,500,000원 x 1개월 x 1명	1,500,000
		○육아 돌봄비용 800,000원 x 1명	800,000
		○성희롱·성폭력 심층 교육 워크숍(개그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여형) 400,000원 x 1식	400,000
		○아티스트사례비 1,000,000원 x 3명	3,000,000
		○홍보물 제작비(디자인) 600,000원 x 1식	600,000
		○회의 진행비 20,000원 x 14회	280,000
		○자료집제작비(VOD) 300,000원 x 1식	300,000
		○회계감사수수료 300,000원 x 1회	300,000
		○원천세 300,000원 x 1식	300,000
		○기타운송비 100,000원 x 1식	100,000
		○재료구입비(소모품) 200,000원 x 1식	200,000
		○스튜디오 대관료 1,000,000원 x 1식	1,000,000
		○무대 소품 대여비(의자, 책상 등) 180,000원 x 1식	180,000
		○영상장비(편집명 및 프로젝트) 임차료 670,000원 x 1식	670,000
		○음향장비 임차료 500,000원 x 1식	500,000
		합 계	10,130,000
	임차료	○현장답사여비 50,000원 x 1일 x 8명	400,000
		합 계	400,000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단체상해보험	○ 단체상해보험 40,000원 x 13명	520,000
	합 계		520,000
		총 계	15,000,000

[메모:12] arko 2021- 04- 12 20:46

☞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감사수수료, 육아돌봄비용, 고용부담금, 단체상해보험 원천세 등 편성금액은 단체(개인)마다 상이합니다.

☞ 단체상해보험, 육아돌봄비용, 장애인 친화형 프로그램 운영은 단체(개인)의 선택입니다.

[메모:13] arko 2021- 04- 12 20:47

※ 본 예산집행계획은 예산입니다. 현실가능한 예산집행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고정단가를 준수합니다.

[메모:5] arko 2021- 04- 12 20:39

* 대표자는 사업 내 역할을 고려하여 일반수용비 내에서 사례비편성 가능

[메모:6] arko 2021- 04- 12 20:39

*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의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돌봄 비용을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모:8] arko 2021- 04- 12 20:40

* 본 사업은 예술인권리보호를 촉진하고자, 성희롱·성폭력 교육의 심화과정 및 워크숍 등을 보조금 내 편성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메모:7] arko 2021- 04- 12 20:40

* 회계감사수수료 예산 집행액 및 회계기준에 따라 변동 사항 있음

[메모:9] arko 2021- 04- 12 20:42

* 사업소득의 경우 3.3% 기타소득 8.8% 으로 계산, 12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 사례비의 경우 소득이 '0'임으로 해당하므로 금액에 대한 신고만 진행(납부금액 없음)

[메모:10] arko 2021- 04- 12 20:44

* 예산집행계획 설정 시 사업에 참여 예술인의 고용부담금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예술인고용보험20.12.10시행)

*단체(개인)마다 상이함, 편성 시 작성바람

[메모:11] arko 2021- 04- 12 20:45

*참여 인원 및 연령에 따라 다름

□ [참고 1]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지원유형 및 규모(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유형 선택 신청)

지원유형		지원액
정책지원	유형①	500만원
	유형②	1,000만원
	유형③	1,500만원
	유형④	2,000만원
	유형⑤	3,000만원

[메모:14] arko 2021-04-12 21:15
 ※ 원천세, 고용부담금, 돌봄비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한 세무서 또
 는 회계검증기관에 문의

□ [참고 2]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원천세 · 고용부담금 · 영유아돌봄비)

원천세	구분		원청징수	비고
	프리랜서 참여자 (배우, 연주자, 스태프 등)		사업소득(3.3%) (지급금액 x 3.3%)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 용역 제공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8.8%) (지급금액 x 8.8%)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 용역 제공
	12,500원 이하 기타소득 사례비		0원	금액에 대한 신고 납부
고용 부담금	적용 대상		보험료 계산	
	일반예술인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월 보수액* x 보험료율(1.6%) ※ 1.6% 중 0.8%는 사업주 부담금, 0.8%는 예술인 부담금 *월평균소득(월단위 계약 시) :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월평균소득(월단위 계약 x) : (계약금액 ÷ 계약일수) x 3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이상		
	단기예술인(계약기간 1개월 미만)			
영유아 돌봄비	적용대상		지원범위	비고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영유아 자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를 둔 참여예술인		1시간당 1만 원 기준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 가능	자문사례비 등 일회성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자녀돌봄비 1인에게 월 23만 원 이상 돌봄비를 지급할 경우, 사례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원청징수(기타소득 8.8%) 필요 ※ 사업정산 시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다원예술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10년의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다원예술의 개념과 흐름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공통질문인 Q1과 Q2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원예술의 개념과 비전체계

2006.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소위원회

□ 다원예술의 개념 정의

○ 예술정책의 대상으로 '다원예술'의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 현재까지 '다원예술'의 개념은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보다 기존 예술정책의 지원과정에서 소외된 영역-실험, 인디, 대안, 복합, 대중예술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한 집합적 용어로 사용되어 왔음.
- 예술현장의 새로운 변화 양상을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어, 기존 예술(지원)정책이 여전히 장르 및 수월성 중심의 일원(一元)적 보편주의를 고수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함.
- 예술현장의 다원적 변화양상과 이의 정책적 수용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르에 대한 실험적 시도'와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창작활동'을 정책의 대상으로 능동적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개념 정립과 관점 수립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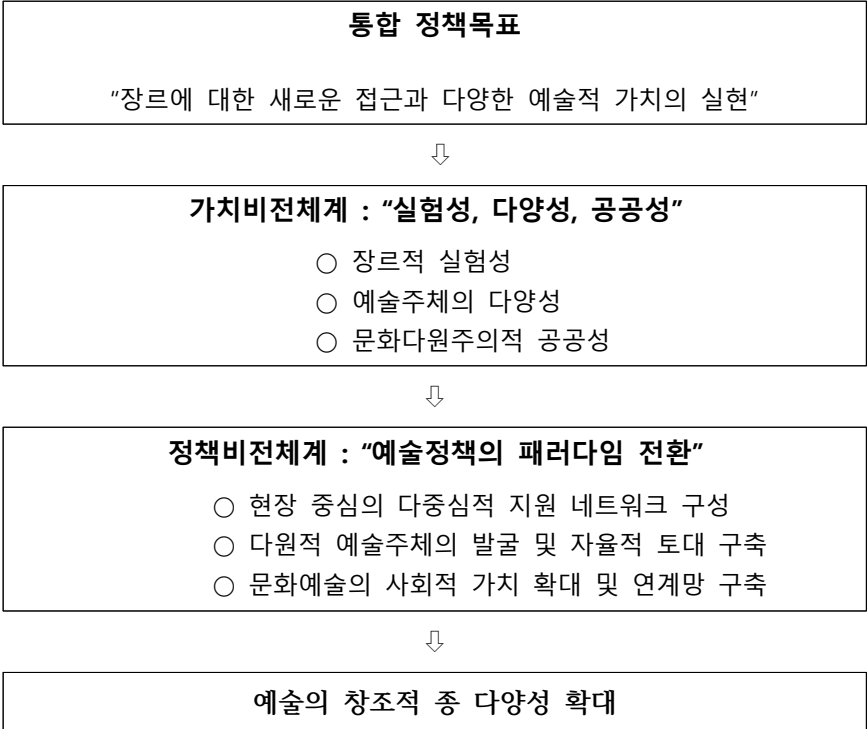
○ '다원예술'의 개념 정의

- 다원예술은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예술창작활동'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창작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야 함.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예술창작활동은
 - 첫 번째, 기존 장르예술에 대한 실험적 시도를 통해 장르예술을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창작활동
 - 두 번째, 장르 예술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장르간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복합장르(혹은 장르복합)의 창작활동
 - 세 번째, 적극적으로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기 위한 창작활동 등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 탈장르적 예술, 복합장르(장르복합)적 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등을 대상으로 함
-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은
 - 첫 번째, 예술계 혹은 장르예술과의 관계에서 비주류적 위치에 놓여있는 대안적 예술창작활동
 - 두 번째, 내재적 자율성과 공공성을 기초로 한 독립예술(인디문화)의 예술창작활동
 - 세 번째, 문화적 소수자집단의 예술적 표현을 기반으로 한 예술창작활동을 포함하는 것임.
 - 비주류예술의 대안적 가치, 독립예술의 공공적 가치, 소수자문화의 문화 다원주의적 가치 등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창작활동이 정책 대상으로 포섭되어야 함.
 - 이러한 개념정의 과정에서, 기존의 '대중예술'의 영역으로 분류되던 '서커스'와 같은 창작활동은 '비주류예술'의 영역으로 통합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다원예술'이란?

-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으로서
-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정리.

□ 다원예술정책의 비전 체계



붙임2

본 사업에서 기존 대비 달라진 내용 및 적용되는 제도

□ 기존 대비 달라진 내용

제도	기존	변경 및 강화
대표자 사례비 책정 가능	○ 보조금 내 대표자 사례비 책정 불가	○ 대표자 사업 내 역할 고려하여 보조금 내 일반수용비 항목으로 본인 사례비(대표자) 책정 가능 (2019년부터 적용)
성희롱·성폭력 예방제도 강화 (시범도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익보호교육 무료 교육 수강 안내	○ 심층·심화적 성희롱·성폭력 교 육 및 워크숍 보조금 내 추가 편성 가능

□ 21년 신규 적용 제도

[1] 고용보험제도 의무화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시 고용보험 가입의무
- 단체(개인)은 참여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금 보조금 내 편성

[2]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 장애활동 촉진 지원 ※ 세부내용은 [붙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참여 증진을 위한 배리어프리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향유 저변 확대
- 장애인 친화형(배리어프리) 운영계획 신청자는 장애인 친화형 프로그램을 위한 소요 비용 추가 편성 가능

[3] 영유아 자녀 돌봄비

- 창작활동 유지를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예술인 돌봄비용 보조금 편성 가능
- 영유아 자녀 돌봄비는 지원신청 시 사전 항목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부 신청 시 반영하고자 할 때 변경신청서를 통해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 영유아 : 만6세 미만의 취학 전
- 참여 예술인은 예술활동을 위해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 신청가능(1시간당 1만원)

[4] 상해보험 가입 편성 가능

- 안전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단체(개인) 상해보험비 보조금 내 편성 가능

[5]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신청 확대

- 21년도 정시공모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지원 신청 가능
- 예술인복지법에 의해 발급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제출단계에 첨부 시 지원신청 가능
(*지원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 배리어프리 운영 계획

※ 출처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음센터)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내 발췌

☞ 해당사항 있을 경우에만 ■ 표시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예산항목에 추가 편성

작품 접근성 공연물, 전시물 등 예술작품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향유 가능한 정도		시설 접근성 주차장, 출입구, 좌석 등 공연장/전시장 시설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정도	
☐	터치투어 ¹	☐	휠체어석
☐	자막(문자) 지원	☐	보호자 동반 객석
☐	수어 지원	☐	이동 슬로프
☐	쉽게 읽히는 안내서 ²	☐	안내원 배치
☐	릴렉스 퍼포먼스 ³	☐	기타 이동 편의시설
☐	음성해설 지원 ⁴	☐	전동 휠체어 충전
☐	점자 안내서	기타 관람 보조장치 (진동스피커, 음성 해설 리시버, 스마트 캡션 안경 등 해당사항 기재)	
☐	큰 글자 안내서		
☐	보이스아이 안내서		

- 1) 터치투어(Touch Tour)** : 시각장애인이 전시물을 손으로 만지면서 감상하는 프로그램 또는 공연 전 무대세트와 무대모형을 만져보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안내 프로그램
→ 예산편성 예시 : 안내원 사례비 등
- 2) 쉽게 읽는 안내서** : 이야기와 등장인물 등이 직관적인 안내와 그림으로 묘사되어 쉽게 읽히는 안내서 또는 시놉시스 제공
→ 예산편성 예시 : 안내서 제작비 등
- 3) 릴렉스 퍼포먼스(Relaxed Performance)** : 조금은 편안한 관람 분위기를 추구하는 공연 및 전시.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관객의 불가피한 입·퇴장을 제한하지 않고 특정 장애를 가진 관객의 신체의 일부가 떨리거나 작은 소리가 나게 되는 경우에도 함께 관람할 수 있음을 모든 관람객이 염두에 두고 관람하는 행사
→ 협의사항 예시 : 공연장 또는 행사장소와 사전 협의 및 관람객 대상 사전 공지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공연 전 안내사항의 녹음이 필요할 수 있음
- 4) 음성해설 지원(Audio Description)** : 시각적인 요소를 묘사하는 음성해설 서비스 또는 출연자 또는 강연자가 자신의 외향 또는 강연 장소의 생김새 등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
→ 예산편성 예시 : 무선송·수신기 대여, 부스 대여, 해설자 사례비 등
- 5) 보이스아이** : 인쇄물의 정보 접근을 위해 음성 변환을 통한 텍스트 정보 음성 제공
→ 예산편성 예시 : 프로그램 대여, 인쇄비 등

붙임4

예산편성 가이드라인(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한 보조세목)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인건비 (110)	기타직 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기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 보건기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가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감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감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보조 비목	보조 세목	내역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채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지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 지원자는 본 사업의 신청 접수 시 동료그룹심의제도, 공정심의 등 사업 과정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단, 서류 제출 시 아래 서약서에 제출 날짜 (일) 및 인적 사항(단체(개인), 대표자 명)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그룹심의참여에 관한 서약서

「2021년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에 신청하는 본 개인(단체)은 동료그룹 심의과정에 참여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기획아이디어, 사업내용, 작품 등)을 제 3자에게 공개 및 누설하거나 불법도용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위 서약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저작권 등)에 따른 처벌 및 공모선정 취소,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이며, 위법한 행위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인 책임이 신청자(개인 및 단체 대표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4월 일

단체/개인명:

대표자 성명: (직인생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Reboot>의 심의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 및 평가한다.
- 본인은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및 「심의위원 직무수행 지침」을 준수한다.
-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사업 신청주체의 대표자 또는 상근임직원인 경우
 2.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심의대상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심의대상사업 신청주체의 직전 대표이었던 경우
- 본인은 상기 제척 사유 이외에 심의대상 사업 또는 신청 주체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이해당사자가 되거나 친인척 관계, 개인적 친분 등) 예술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심의를 회피한다.
- 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적 영리추구나 이해관계에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 본인은 심의위원 위촉 수락이후부터 예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까지 심의참여여부 및 심의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얻게 된 회의내용, 심의정보, 신청자의 정보,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 본인은 상기 서약 내용 위반 시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제외되며 향후 10년간 예술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고 있으며, 위반으로 인하여 예술위원회에 재산상 손해 및 명예 또는 공신력에 현저한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본인은 기타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2021년 04월 일

단체(개인명):
성 명:

(직인생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서약서는 심의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 및 심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대상 지원신청단체(예술가)를 대상으로 심의절차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은 옴부즈만 신청 대상임에 따라 심의과정에 대한 신청단체의 이의제기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